

대구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2가단154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중양회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손병희

원고보조참가인A중양회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하

변론 종결2024. 9. 24.

판결 선고2024. 10.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 2. 18. 접수 제3389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 전인 2022. 12. 29.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채권자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 13. 대구지방법원 2023개회114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4. 1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의 구상금채권도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다. 이 법원은 원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소송을 수계하지 않아 2024. 8. 8.

민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원고를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는 현재 폐지되거나 종결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이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보조참가인이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3. 4. 17.부터 1년(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참조)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

별지